

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

2013.03.01. 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구성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,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대학구성원의 성적자율권 확보와 인격적인 교육 및 근로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이 규정은 성폭력이 발생한 교내·외를 불문하고 정관 및 학칙의 적용을 받는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, 피해자 또는 가해자 중 어느 한쪽이 해당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“성폭력”이라 함은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·언어적·심리적 폭력으로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 행위를 포함한다.
- ② “성희롱”이라 함은 성범죄의 구성요건과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한다.
 1. 성적인 농담, 폭언,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행위
 2.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, 고용,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
 3.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
 4. 성희롱의 가해자 및 그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
- ③ “성폭력 범죄”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말한다.

제4조(의무)

대학과 대학구성원은 대학 내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적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)

-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및 질문에

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.

②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나 배제 등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.

③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.

④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가해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제2장 성폭력 상담 및 처리기구

제1절 성폭력 상담실

제6조(설치)

성폭력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위해 성폭력 고충상담창구(이하 “상담실”이라 한다)를 둔다.

제7조(구성)

①상담실에 실장을 두되, 상담실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

②상담실장은 상담실의 업무를 통할하며 상담실에는 성폭력 상담위원을 둔다.

제8조(상담위원의 자격)

상담위원은 성폭력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경험, 자질을 갖춘 자로 성폭력 특별위원회 에서 추천하며 그 상담원의 수는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.

제9조(업무)

상담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
2.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
3. 필요시 성폭력 특별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의 처리요청 및 보고
4. 성폭력 위원회에서 의결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를 가해자 및 피해자에게 통보
5.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심리치료

제2절 성폭력 방지 특별위원회

제10조(설치 및 기능)

-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, 위원은 학생대표, 교원대표, 직원대표, 총학생회 추천 1인으로 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되, 여성위원이 최소 3인 이상이 되게 한다.
-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.
- ④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위해 상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특별 위원 중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이 때 조사위원의 임기는 사건의 조사가 종결되는 때로 한다.
- ⑤위원장은 성폭력 사건의 신고사항 중 피해자 및 가해자에 학생이 포함되지 않은 사건을 처리하는 위원회에는 학생위원의 참석을 제외한다.
- ⑥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제12조(회의)

-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 1인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 하게 한다.
- ②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씩 연 2회를 개최한다.
- ③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.
 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
 2. 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
 3. 상담실에서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을 때
- ④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성폭력 사건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.
- ⑥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준비하고 회의의 서무를 처리한다.

제3장 성폭력 사건의 처리 및 절차

제13조(신고)

- ①피해 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상담실에 한다.
- ②피해신고는 서면, 전화,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- ③상담실 이외의 학내 부서에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담실에 인계하여야 한다.

제14조(상담)

- ①상담실은 성폭력 피해 신고를 받으면 친절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②상담실은 상담을 통하여 심리적 지원, 당사자와의 중재 등 필요한 지원을

한다.

③상담실장은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에 회부시켜 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.

1. 피해자의 피해가 성폭력에 상당한다고 판단될 때
2.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반윤리적·부도덕적이라고 판단되어 위원회에 회부할 필요성이 있을 때

제15조(조사 및 보고)

①위원장은 상담실에서 회부된 사건을 조사위원회에 필요한 심사 및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조사위원장은 피해자로부터 특정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하며, 조사위원장이 그 대상일 경우에는 조사위원 중 위원장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.

③제 1항의 심사 및 조사요청을 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6조(결정 및 처리)

①위원회는 제 13조 제 2항에서 조사 보고된 사건을 심의 의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.

1. 피해자에게 민·형사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조치
2. 가해자에 대하여 관계법 및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
3.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일 경우 반성문 제출, 의무 교육 등 가해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
4.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·봉사·배상 등의 지도
5.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해당 성폭력 사건의 신고자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나 재범일 경우에는 가중 징계하며, 대자보, 학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실명 공개 사과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실명을 통한 사과도 허용함.
6.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

②위원회는 사건 처리 및 조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당사자 및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4장 교육 및 예방조치

제17조(교육)

①상담실장은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교내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

화하며,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
2. 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
3. 성폭력 가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
4.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심리상담
5. 기타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

②구성원에 대한 교육업무는 교원은 교무처, 직원은 행정실에서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18조(예방조치)

상담실장은 성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한다.

1. 상담창구 마련
2. 상담업무 담당자 교육지원
3.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
4.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및 재발방지대책수립
5. 성폭력 관련 피해자의 불이익 조치 금지

부 칙

①(시행일)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본 규정의 적용은 규정이 시행된 날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신고부터 적용한다.